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고색초등학교

1. 목적

교사(校舍) 내·외부 시설물을 화재·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CCTV 설치 현황

구분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대수	성능
내부	본관중앙현관	1	200만화소이상/ 슈퍼IR6 LED 3.6m와이드 보안용 카메라
	본관동쪽출입구	1	
	본관중앙현관뒤(우유냉장고쪽)	1	
	후관중앙현관	1	
외부	정문초소	1	
	본관중앙현관앞	1	
	본관서쪽출입구(유치원쪽)	1	
	후관서쪽외벽	1	
	본관동쪽외벽	1	
	구령대	1	
	후관후면서쪽외벽(텃밭)	1	
	등나무벤치	1	
	강당좌측외벽	1	
	강당뒷편외벽(주차장)	1	
	본관중앙현관뒤	1	
	창고왼쪽외벽	1	
	강당옥상에서운동장쪽	1	위성능과동일 2019년6월신규설치
	본관옥상서편운동장쪽	1	
	본관옥상동편운동장쪽	1	
	운동장서쪽담장등나무벤치쪽	1	
	강당에서분리수거장쪽	1	위성능과동일 2022년4월신규설치
	구령대에서 놀이터쪽	1	300만화소이상/ 25배광학줌/최대거리160M/ IR LED 2025년 6월 신규설치
기타	민원면담실	1	200만화소이상/ K1080-IR24 3.6m 2023년11월 신규설치 (면담실이용시에만 작동)
설치 총 갯수		23	

CCTV현황



3. CCTV 관리.운영 담당자

구 분	직	업 무	연락처
관리책임자	교감	관리 및 운영 총괄	031-291-4387
정보공개 담당자	행정실장	CCTV 관련 민원 처리 및 설치유지보수	031-293-5435
운영책임자	정보부장	CCTV 운영 담당	031-291-4387
운영담당자	CCTV 업무 담당자	CCTV 운영 실무	031-291-4387

4. CCTV 모니터 설치 장소 : 본교 숙직실(22대), 본교 민원면담실(1대)

5. 화상정보 관리.운영시 유의사항

가. CCTV 촬영시간 : 본교 숙직실(22대)-24시간
 본교 민원면담실(1대)-민원면담실 이용 시

나.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다.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되며, 지정된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 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라.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마.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사.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아.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감 및 행정실장으로 하고, 기타 필요시 학교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인원(야간당직자 등)으로 제한한다.

자. 야간당직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일 점검하고 운영·관리한다.

차.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며,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카.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6.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는 고색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색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
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사항

가.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1) 설치장소: 고색초 정문
- 2) 내용

교내 CCTV 촬영 중

- 목 적 : 학생안전관리, 학교시설관리 등
- 촬영범위 : 교사(校舍) 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담당부서 : 행정실(031-293-5435)
교무실(031-291-4387)

- 고 색 초 등 학 교 장 -

나 CCTV 설치.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
[양식] CCTV 운영 기

CCTV 운영·관리 대장

[illegible]

[illegible]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 하지 않으면 처리 가 곤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00.01.01 00:00 ~ 2000.01.31 00: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색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위 임 장				
① 위임받는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② 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